

인천광역시서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<http://www.seo.incheon.kr/>

선

기관의장

람

제1949호 2025.10.17.(금)

차 례

공 고

○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202호 인천광역시 서구 인터넷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——— 1

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5-2202호

인천광역시 서구 인터넷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인천광역시 서구 인터넷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. 10. 17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1. 개정이유

- 인터넷(홈페이지·소셜미디어) 기반 공모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 참여 활성화 및 적극적인 소통 확대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를 통한 공모전 실시 근거 마련 (제17조제1항)
- 공모전 경품 제공 근거 마련 및 경품 제공 기준 구체화 (제17조제2항 및 제3항, 별표 1)

3. 의견제출

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25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(참조 : 홍보정책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전화 032-560-0981, 팩스 032-560-2709)
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
인천광역시 서구 인터넷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제안이유

인터넷(홈페이지 · 소셜미디어) 기반 공모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 참여 활성화 및 적극적인 소통 확대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를 통한 공모전 실시 근거 마련 (제17조제1항)
- 나. 공모전 경품 제공 근거 마련 및 경품 제공 기준 구체화 (제17조제2항 및 제3항, 별표 1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해당없음
- 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: 가정보육과, 감사실 합의
- 라. 기 타: 해당없음

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

인천광역시 서구 인터넷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서구 인터넷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의 제목“(이벤트 실시)”를“(이벤트 및 공모전 실시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“이벤트를”을 각각 “이벤트 및 공모전을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이벤트 운영”을 “이벤트 및 공모전 운영”으로, “이벤트 시작”을 “이벤트 및 공모전 시작”으로 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이벤트 및 공모전 경품제공 기준(제17조제2항 관련)

구 분	대 상	방법	제공 액수 한도 (1회당)	횟수/ 제한기준
글·사진·동영상 게시	당첨자/ 참여자	심사/ 추첨	300만원 이하	연 12회 이하
퀴즈 및 게임	정답자	추첨	300만원 이하	연 12회 이하
설문 및 토론	참여자	심사/ 추첨	300만원 이하	연 12회 이하
정기이벤트	당첨자/ 참여자	심사/ 추첨	20만원 이하	주간/월간 정기이벤트
그 외 기타 이벤트	당첨자/ 참여자	심사/ 추첨	200만원 이하	연 12회 이하
공모전	당첨자/ 참여자	심사/ 추첨	1,000만원 이하	연 12회 이하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7조(이벤트 실시) ① 구청장은 주민의 적극적인 구정참여·홍보, 주민 상호 간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<u>이벤트</u>를 실시할 수 있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<u>이벤트</u>를 개최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.</p> <p>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의 종류, 액면가 등 그 밖에 <u>이벤트 운영</u>에 필요한 사항은 <u>이벤트 시작</u> 전에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.</p>	<p>제17조(이벤트 및 공모전 실시) ① 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이벤트 및 공모전</u>을 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이벤트 및 공모전</u>을 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<u>이벤트 및 공모전 운영</u>----- <u>이벤트 및 공모전 시작</u> -- ----- -----.</p>